

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고자	신고번호	신고 연월일	
	상호(명칭)		
	소재지		
변경 사유	[]소재지 []명칭 []법인의 대표자 []그 밖의 사항()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소독업 신고증 원본 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
신고서 작성 신고자	→ 접수 →	확인 →
결재 →		변경내용 기재 →
발급		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		